

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정 제주



---

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

---

**Jeju** 제주특별자치도  
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

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

#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

제정: 2014. 3. 6.

개정: 2019.10.22.

## 1 제도개요

### 1) 개념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가공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유네스코 인지도 + 생물권보전지역 청정성 ⇒ 상품경쟁력 강화

### 2) 추진배경

-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,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브랜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
- 로고 개발·활용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자원의 브랜드화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의 필수전략임

### 3) 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(심벌마크의 활용)

### 4) 추진방향

- 참여업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가치 정립
- 국가 인증(유기농인증, 무농약인증 등)이나 도 인증(마크 등)을 취득한 개인, 단체, 법인으로 대상 한정

5) 브랜드 개요

○ 브랜드 아이덴티티(BI)

-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념을 지향하고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친환경·자연친화 생산품

○ 브랜드 비전

-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이 선순환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체제 구축

○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



<의미>

- 타원형: 지구와 제주도 상징
- 생태계, 하천, 바다, 한라산 상징
- 글씨체: 바람과 파도에 깎인 현무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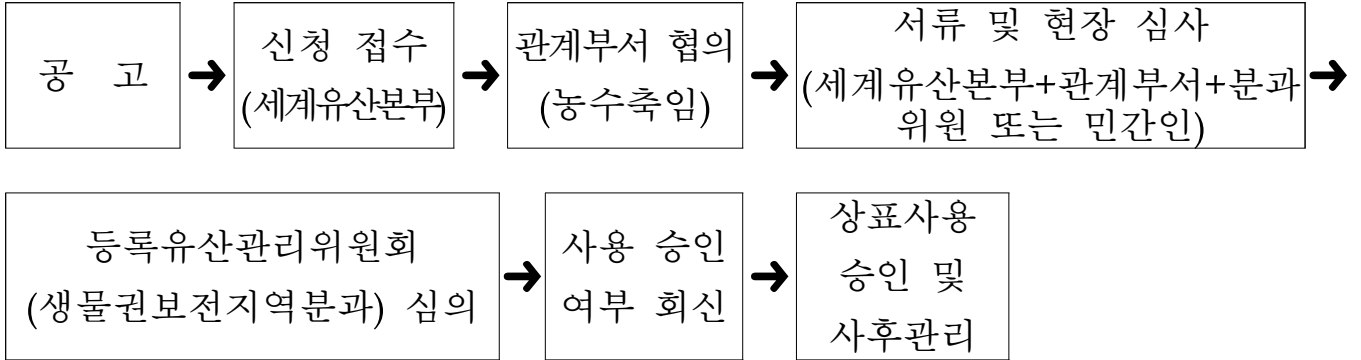
6) 적용범위

○ 제주도 전역 + 해양경계 5.5km이내

<p><b>핵심구역</b> (39,951ha)</p>	<p>한라산국립공원, 영천, 효돈천, 문섬 습지보호지역, 생태계보전지구(1·2등급),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, 천연기념물, 천연보호구역, 해양보호구역 ※ 면적 30만㎡ 미만인 핵심구역 및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핵심구역에서 제외</p>
<p><b>완충구역</b> (72,286ha)</p>	<p>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(법정보호지역제외)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 ※ 면적 30만㎡ 미만인 핵심구역은 완충구역에 포함</p>
<p><b>협력구역</b> (274,957ha)</p>	<p>육지부: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부: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.5km이내 지역 ※ 핵심구역 중 지목상 개발가능 지목은 협력구역에 포함</p>

## 2 추진절차

### 1) 상표 사용 승인 절차



### 2) 세부 진행 절차

#### ○ 공고 및 신청

- 공고시기: 년 2회(상반기, 하반기)

※ 특별한 사정에 의해 「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관리위원회」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고를 취소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.

- 신청방법: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및 증빙서류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

#### ○ 서류 및 현장 심사

- 서류심사: 서류상 자격요건, 인증취득 여부 검토
- 현장심사: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,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

#### ○ 사용승인 심의

- 심의주체: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등록유산 관리위원회 생물권 보전지역 분과위원회
- 심의방법: 세계유산본부가 작성한 사전 심사보고서에 의한 승인 여부 심의(세계유산본부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관련부서, 심의의원 또는 민간인과 합동심사 할 수 있다.)

#### ○ 사용승인 통보

-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상표사용승인허가서(별지 제2호서식) 교부 및 인증현판 지급

### 3 상표사용 승인 및 관리 지침

#### 1) 승인 대상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·수·축·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
- 상표사용 승인 단위는 생산(출시)되는 제품(명) 단위로 한다.

#### 2) 승인 신청 대상자

-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, 단체, 법인

#### 3) 승인 기준

- 생물권보전지역내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 친환경인증, 정부 품질인증, 정부 안전관리인증, 제주도 품질인증 취득 여부 등 [별표 1. 승인가준표]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#### 4) 승인 기간

- 승인가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매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사용 연장하고자 할 경우 사용 연장 신청서(별지 제4호서식)를 승인가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5) 승인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

- 세계유산본부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당초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(필요시 관계부서 합동)

#### 6) 변경신청

- 변경신청 대상: 생산지,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사항 (이 경우 변경내용이 승인가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)
- 변경신청 방법
  -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표사용 승인변경신청서(별지 제3호서식)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변경신청 승인

- 세계유산본부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(필요시 현장방문)

7) 지위승계

-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(이하 '상표사용자')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지위승계 신청서(별지 제6호)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8) 승인취소 등

-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
  -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
  -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
  - 전업·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(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신고서(별지 제7호)를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)
  -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·보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  - 변경신청 및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그 외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(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)
- 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승인을 하지 아니한다.
  - 재승인의 제한 기준에는 동일 장소, 동일 품목, 동일 상표 사용자를 포함한다.

9) 비용 부담

- 스티커 제작인쇄, 포장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표사용자가 부담한다.

10) 상표의 사용

- 상표는 승인품목에 한해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(전단지, 포스터, 홈페이지 등)에만 사용할 수 있다.
- 상표 사용권리를 타인(사)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11) 기타사항

- 상표사용자는 홍보에 필요한 정보 또는 물품제공 등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승인품목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유지,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
- 상표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·크기·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.
- 세계유산본부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, 설문조사, 방문조사 등을 상표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## 4 붙임

- 별표 1. 승인가준표
- 별표 2.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 승인번호 부여 방법
- 별지 제1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신청서
- 별지 제2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허가서
- 별지 제3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고서
- 별지 제4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기간 연장 신고서
- 별지 제5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지위승계 신고서
- 별지 제6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자 휴업신고서
- 별지 제7호 서식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대장

**【별표1. 승인기준표】**

대상	승인기준
농임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유기농’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무농약’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3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농산물우수관리인증(GAP)’ 을 취득한 자</li> <li>4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/ol>
축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유기축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‘무항생제축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3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li>4. 별끌인 경우 최근 2년간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생산규모가 50군 이상 인자.</li> </ol>
수산물	<p>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친환경수산물’ 인증을 취득한 자</li> <li>2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‘수산물품질인증’ 을 취득한 자</li> <li>3.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·특산물 공동상표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(J마크) 사용허가를 득한 자</li> </ol>
천연자원	<p>대상품목 : 고사리 등 산나물류, 조릿대, 야생버섯, 약초류, 먹는샘물</p> <p>천연자원을 합법적으로 채취 또는 수매하여 판매하는 자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세척·포장·유통과정에서 오염 요인이 없어야 한다.</li> <li>2.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li> <li>3. 세척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li> <li>4. 포장 등 작업구역과 저장장소, 수송수단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,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</li> </ol>
가공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을 주원료로 (50% 이상) 하여야 함. (주원료는 개별식품의 주용도,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이나 제품과 구별,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.)</li> <li>· 비인증 원료와 혼합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비인증 원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.</li> <li>· 제조과정 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수는 「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</li> <li>· 식품위생법, 농수산물품질관리법, 식품산업진흥법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</li> </ul>



**【별표2.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 승인번호 부여 방법】**

**1. 인증번호의 구성: 6자리 숫자 체계(연도-산업분류-일련번호)**

인증 연도	산업분류	인증 일련번호
° 인증한 연도  “예” 2019년도 ⇒ 19	° 산업분류 01: 농임산물, 축산물, 수산물 천연자원 이용 등 1차산물 02: 가공품 등 2차산물  “예” 1차 산업물(농산물등) ⇒ 01	° 인증한 순서에 의한 연도에 관계 없이 계속 일련번호  “예” 5번째 인증 ⇒ 05

**2. 인증번호 부여방법**

가. 인증번호 부여


- 1) 품질인증연도 : 19(2019년도), 20(2020년도)
- 2) 1차, 2차 산업물 구분: 01(1차 산물), 02(2차 산물)
- 3) 인증번호: 00(인증 일련번호)

나.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하여 부여한다.

“예” 연장 : 기부여 제19-02-05호 ⇒ 제19-02-05호

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		<p>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 허가서</p>		
<p>인증번호</p>				
<p>사 용 권 자</p>	<p>성명 또는 대표자</p>			<p>주민등록번호</p>
	<p>법인 또는 작목반</p>			
	<p>주 소</p>	<p>(전화)</p>		
<p>허 가 내 용</p>	<p>대 상 품 목</p>			
	<p>허 가 기 간 (인 증 기 간)</p>	<p>년 월</p>	<p>일부터</p>	<p>년 월 일까지</p>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    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</p>				







【별지 제6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사용자 휴업신고서

기본 정보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
	법인명(작목반)		참여농가수	
	주 소		전 화 번 호	Tel. HP.
	전 자 메 일	@	팩 스 번 호	
휴업기간	부터 까지			
휴업사유				
<p>「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 사용자 휴업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〔신청인〕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</p>				
<p>〔첨부서류〕 없음</p>				

【별지 제7호서식】

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상표 사용승인 대장

일련 번호	인증 번호	사 용 권 자				내 용				비 고
		성 명	주민등록 번호	법인또는 작목반명	주 소 (전화번호)	대상 품목	승인 사유	승인 물량 (톤)	사용 기간	